

## 수수료(제90조제1항 관련)

### 1. 공통기준

가. 수수료는 신청비, 출장비, 심사·관리비를 포함하며, 신청인이 부담한다.

나. 출장비

- 1) 공무원은 「공무원 여비 규정」에 따른 5급 공무원 상당의 지급기준을 적용하고,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같은 규정에 준하는 금액을 적용한다.
- 2) 출장기간은 인증심사 또는 공시심사에 소요되는 기간 및 목적지까지 왕복에 드는 기간을 적용하고, 출장인원은 실제 심사에 필요한 인원을 적용한다.

다. 심사·관리비

- 1) 서류심사, 현장심사, 심사보고서 작성, 생산과정조사 및 그 밖에 심사·관리에 드는 비용으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,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.
- 2)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은 1)에 따른 심사·관리비에 대한 표준관리비를 정하여 고시·징수하고, 인증기관에 권장할 수 있다.

라. 그 밖의 사항

- 1) 인증심사에 필요한 토양·수질 및 생산물 등에 대한 각종 검사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, 인증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.
- 2) 공시의 심사에 필요한 주성분·유해중금속 등의 분석 및 시험비용은 공인 시험연구기관이 정한 수수료로 하되, 공시의 신청인이 납부해야 한다.
- 3) 인증기관(해당 인증기관이 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20조제1항에 따라 의무자조금의 수납을 위탁받은 기관인 경우로 한정한다)은 신청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법 제56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인증수수료와 「농수산물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」 제19조제1항에 따른 의무거출금을 통합하여 고지서를 발급할 수 있다.

### 2. 개별기준

| 납부 대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신청비 | 출장비                          | 심사·관리비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가.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34조제3항에 따라 인증을 받으려는 경우 | 5만원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|
| 나. 법 제20조제8항(제34조제4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        | 2만원 | 공통기준 적용<br>(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) | 공통기준 적용<br>(현장심사를 한 경우로 한정함)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포함한다)에 따라<br>인증 변경승인을<br>받으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다. 법 제21조제2항<br>(제34조제4항에서<br>준용하는 경우를<br>포함한다)에 따라<br>인증을 갱신하려<br>는 경우           | 5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라. 법 제21조제3항<br>(제34조제4항에서<br>준용하는 경우를<br>포함한다)에 따라<br>인증의 유효기간<br>을 연장받으려는<br>경우 | 5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마. 외국의 정부 또<br>는 인증기관이 법<br>제25조에 따라 동<br>등성을 인정받으<br>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| 국립농산물품질<br>관리원장이 정하는<br>금액(상호주의에<br>따라 면제 가능) | 국립농산물품질<br>관리원장이 정하는<br>금액(상호주의에<br>따라 면제 가능) | 국립농산물품질<br>관리원장이 정하는<br>금액(상호주의에<br>따라 면제 가능) |
| 바. 법 제26조 또는<br>제35조에 따라 인<br>증기관으로 지정<br>받거나 인증기관<br>지정을 갱신하려<br>는 경우            | 10만원<br>(정보통신망을 이<br>용하여 신청하는<br>경우에는 9만원)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사. 법 제38조제1항<br>에 따라 공시를<br>받으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아. 법 제39조제2항<br>에 따라 공시를<br>갱신하려는 경우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자. 법 제41조에 따<br>라 시험연구기관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30만원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공통기준 적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없음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|
| 으로 지정받거나<br>시험연구기관 지<br>정을 갱신하려는<br>경우                      |      |         |    |
| 차. 법 제44조에 따<br>라 공시기관으로<br>지정받거나 공시<br>기관 지정을 갱신<br>하려는 경우 | 40만원 | 공통기준 적용 | 없음 |

### 3. 납부방법 등

가. 수수료는 신청 시 납부해야 한다.

나. 납부된 수수료는 반환하지 않는다. 다만, 인증심사 또는 공시심사가 이루어지  
기 이전에 신청을 포기한 경우 출장비와 심사·관리비는 반환해야 한다.

다. 인증기관 또는 공시기관이 폐업, 업무정지, 지정취소 또는 그 밖의 부득이  
한 사유로 인증 또는 공시 업무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 수수료는 국립농산물  
품질관리원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반환해야 한다.

라. 수수료의 납부는 지정된 계좌로 납부받아야 하며, 납부받은 수수료는 구분  
하여 회계처리해야 한다.